

제45회 제1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4289년 1월 30일 상오 10시 2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월 30일 하오 1시 4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16명

결석의원

이소규, 임일남, 문택호, 김길환, 이문길 각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除戶兵)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보고사항

- 1) 제44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2) 향동시장 점포 임차사용 진정서 보고
- 3) 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자동차 등 통행로 변경 진정보고
- 4)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 대표자 회의참석 결과보고
- 5) 재건축택 건축문제 조사 결과보고

◆부의사항

- 1) 목포시직원 신원보증 조례 개정의 건
- 2) 목포시공식조례 개정의 건
- 3) 목포시의회 권한위임 조례 개정의 건
- 4)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
- 5) 단기 4288년도 제1회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 6)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설치안
- 7)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안
- 8) 기타
 - 가. 상수도 설치의 건(나주읍장 나주읍 의장 통고문)
 - 나. 향동시장 관리의 건

8. 토의사항

◆ 보고사항

※ 가. 제44회 제2차 회의록 낭독

본 건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

※ 나. 만호동 거주 안강생 외 7인으로부터 제출한 향동시장 점포 임차사용 진정서 내용을 서기 박찬대 낭독

※ 다. 용당, 산정, 동민으로부터 제출한 연동 간통도로에 대한 자동차등 통 행로 변경 진정서 내용을 서기 박찬대 낭독

이 양 진정 사항을 기타사항으로 토의할 것을 동의. 재청

동의제안자 : 김영완 의원

표결결과

(나)항 재석 16명중 가 13표 가결

(다)항 재석 16명중 만장일치 가결

※ 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 대표자 회의참석 결과보고

본 건 당 의회 참석자 부의장 이소규 불참으로 차기 의회에서 보고기로 결의

※ 마. 재건 주택건축문제 재조사 결과보고

- 본 건에 있어서는, 당시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로서 공개불능의 성질의 것이오니 비밀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김자홍 의원의 발언이 있었음
- 상기 5건 보고 이외에, 흥업은행장으로부터의 목포지점 잔류에 대한 성원요망의 전문 및 중앙으로부터의 부담금 납부요망의 전문과 도의회의장으로부터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의요구문의 낭독이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

※ 바. 유달동 수도설치 문제에 대하여

본 건에 관하여는 수도설치 특별조사위원, 정응표 김창현, 손백수 각 의원으로부터 조사 결의한 다음 건의서 내용의 낭독이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

1. A급수전은 당초설계 장소에서 B급수전 수평까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B급수관은 당초설계 장소위치선로에서 하부 김영균댁 정원을 통하여 부설할 것
3. B급수전은 당초설계 장소에서 하부 석조 계단하 지점에다 설치할 것
4. C급수전은 AB급수전의 수압에 지장이 없는 한 곡선에서 배수지측으로 급수전 1전을 증설 할 것

※ 8.15 해방 후 시민 총 봉기하여 거시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도 및 중앙요로에 절충하여 당지에 건축 개교케된 전남대학교 목포상과대학에 대하여 당교 모교수로부터 전문한 바인데, 해교 예산 관계의 지변난과, 교수진용의 미약으로 부득이 강의차 교수들이 일일히 목포까지 와서 교수하는 등 지장이 불선(不鮮)한 바 있어 광주로 이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다. 만약 해사정이 사실이라면 상도(商都) 목포의 일대 수치일 뿐 불시라 당 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서급히 이문제의 진가여부를 규명키 위하여 문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5인위 혹은 3인위를 구성 조사 보고케 할 것을 긴급동의. 재청...7청

- 표결결과 재석 16명 전원 찬성가결
우제안자 : 김영완 의원

◆부의안

※ 가. 목포시직원 신원보증조례 개정의 건

- 본 건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14표 가결
우제안자 : 정응표 의원

※ 나. 목포시공식조례 개정의 건

- 실정에 비추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14표 가결
우제안자 : 이복주 의원

※ 다. 목포시의회 권한위임조례 제정의 건

- 본 건에 있어서는 종전부터 사실상 유형 무형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합법적으로 성문화 한 것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33조의거 제안케 된 것이라는 행정부측의 이유설명에 대하여

◇정 응 표 의원

- 본 의원은 제안자의 1인이나 1항, 2항은 찬동하되 「3항의 경이(경미)한 청원의 수리처결」 경이라는 분구의 한계가 애매하여 이해키 곤란하니 본항의 삭제를 바라는 발언이 있자

◇이 복 주 의원

- 정 의원의 3항 삭제 동의에 찬성하며 1항은 원안대로 통고하여도 가하나 2항 역시 지방실정에 불부(不符)하면 제정할 필요조차 없으며 유독 내무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불가하니 본 항도 삭제할 것을 개의.
(개의집 찬동 없어 폐기)

◇이 재 흥 의원

- 근근 임기만료도 다될 무렵 이제야 의회권한위임조례제정이란 이해키 곤란한 문제이며 내무위원회에만 해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편파성을 띄울 우려가 농후하니 본 조례안 전문을 당분간 상정보류 할 것을 재개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9표 가결

※ 라.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 출 추가경정예산안 본안에 대하여 간사 방재수로부터 제안 이유설명에 이어

◇손 백 수 의원

- 행정부로서는 조속통과 집행할 것을 희구할 것이나 남교동 공설시장비등 거액의 것이 있으니 전문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 검토케 하여 제출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16명중 가 15표 가결

※ 마. 단기 4288년도 제1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 출 추가경정 예산안

◇김 창 현 의원

- 본 안을 정리수자에 불가한 것이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가 있자

◇이 복 주 의원

- 본 건 역시 전문 분과위원회에 회부 검토케 할 것을 개의. 재청...3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1표 가결

※ 바.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설치안

본 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우 동의제안자 : 김창현 의원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5표 가결

※ 사. 단기 4288년도 제1회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 출 예산안

본 안은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심 검토케 한 후 제출케 하자는 동의.
재청

우 동의제안자 : 정응표 의원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3표 가결

◇우 전당포 문제에 있어 일전에 목포일보지상보도로써 탐지한 바이나 시내에 사설 전당포가 범람하여 월 2할이라는 고리로서 세공민을 울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본 실정을 문교사회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한 후 사직당국에 호소케 하자는 긴급동의, 재청...7청

동의제안자 : 김영완 의원

◇이 재 흥 의원

- 참고로 말하나 사중문제를 시의회에서 조사하다는 것을 월권행위로서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긴급동의 표결결과 재석 의원 16명중 가 7표 부결

◆기타사항

※ 가. 상수도 설치의 건

본 건에 대하여 간사 방재수로부터 나주읍장 나주읍의장 으로부터의 통고문 낭독이 끝나자

◇정 응 표 의원

- 작일 모 나주 기관인으로부터 전문한 바인데 시장 및 관계과장이 수차현 지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라(在羅) 관계기관과는 일언반구의 상의조차 없었다하여 대단흥분하드라는 말을 들었다. 시장은 이 문제를 여히히 생각하는가

◇김 영 완 의원

- 본 의원도 나주출신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이 크다 전문한 바에 의하면 나주인의 반대이유는 1. 예의결례 2. 장차 설치될 비료회사의 용수문제 3. 나주읍 백년대계의 수도시설등등 인 것 같으며 그 설계에 대한 오해가 개재된 것 같으니 행정부에서는 일일속히 방나(訪羅)쌍방 합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복 주 의원

- 나주로부터의 통고문은 당 시 및 시의회를 모독한 것이다. 아즉 국가예산도 미정한 이때 읍의회에서 사중 막연한 결의로서 공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문제를 행정부에 이임하고 의회에서 밀고 나가기로 하자.

◇오 세 일 의원

- 나주 거주인에게 들은 말인데 나주읍은 수도가 불필요하다 한다. 만약 나주에 상수도를 설치하게되면 5억 환이란 막대한 금액이 나주에서 소비될 것인가 나주읍민은 환영하는 것 같다.

◇하 시장

- 나주읍 및 의회에서 여러말이 있는 것 같으나 본인이 일차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부서는 찬성한다하여도 OEC문제다. 근간미(국)인기술관 일행이 내목하게 되는데 기존 수원지 제방을 구축하든가, 나주가 될지 금천면이 될지 아직 그 장소도 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근본대책도 결정짓지 안했다. 여사한사정인데 어떻게 재라기관과 상의할 것인가 어떠한 문제든지 시기가 있는 것이며, 본인은 시기상조로 보는 것이다. 이 근본 문제만 해결되면 의원 제위와도 충분한 토의를 거듭하여 선처할 방침이다.

◇이 재 흥 의원

- 그러나 이 수도문제를 급속해결하기 위하여 OEC 기술관이 내목하기 전에 의장과 나주출신인 김영환의원을 포함한 5인위원을 구성하여 나주에 급파 애걸복걸보다 인사정도로라도 여론수습을 하는 것이 가 하다는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 만장일치 가결
위원은 의장 박찬규, 김영환, 오세일, 김팔용, 이재홍 각 의원을 지명

※ 나. 항동시장 관리의 건

본 건에 대하여 간사 방제수로부터 준공 경위설명이 끝난 후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비밀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

◇이 복 주 의원

- 해 시장관리문제에 대하여 행정부로서도 상당한 난관이 개재된 것 같으니 비공개 회의에서 대체운곽을 잡은 후 본회의에 공개 토의키로 하자는 동의.

◇정 응 표 의원

- 시민의 대 관심사인 해 시장관리문제를 비밀회의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오해를 받기 쉬우며 부당한 처사이오니 공개석상에서 직시결의를 보자는 개의에 이어

◇김 영 완 의원

- 항동시장설치 동기가 종전 판자옥철거당시 주민과 중동시장상인의 기본방침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니 그 한계를 명백히 한 후 비밀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재개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 만장일치 가결

※ 바. 북교국민학교 교장관사 문제

◇이 재 흥 의원

- 북교국민학교 교장관사는 당교사친회의 소유재산이나 6.25 동란 전 취득 당시 잡종공과금의 면제를 모책하고자 사장명의로 등기 수속을 하여 두었던 것인바 금반 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타 건물로 대체코저 하나 전기 부동산이 시유재산 같이 되어어 등기수속상 필요하니 본 의회에서 그 매각 처분에 대한 결의를 요망하는 발언에 이어

◇이 복 주 의원

- 시유재산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시장과 해교 사친회간에 합의 적의선처하라는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 만장일치 가결

※ 사. 회기연장

◇김 삼 성 의원

- 금차회기중 각상임분과 위원회에 회부심의케한 안건이 수다하오니 내 24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자는 회기연장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 만장일치 가결.

산 회

(하오 1시 40분)

곧이어 비밀회의로 들어감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월 34일

시의원 김 자 홍

시의원 김 필 용

작성자 주 도 식

※페이지 누락 있었음.

※ 북교국민학교장 사택 소유권 한계의 건

표기의건에 관하여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去) 1월 30일 개최된 제 45회 당 시 의회에서 현 북교 국민학교장 사택은 단기 4283년 1월 16일자 형편상 시장명의로 구입하여(대금 일체는 사친회경비부담) 현존하는바 금반 이를 매각처분코저 당 시의회의 회의결의를 요구하여 왔으나 본 건은 실내용이 시유재산이 아니므로 의회 권한외이기 때문에 비시유재산 이라는 것만은 결의하였음을 확인함

단기 4289년 1월 30일

목포시의회의장 박찬규

결 의 서

말미 기재의 부동산은 당 시소유이온 바 금반 전기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여 동 대금을 운용하기로 결의함.

부동산표시

목포시 북교동 177번지의 1

대지 61평

동소 177번지의 1

목조와즙 2계건 주가 1동

건평 26평 2흡 5작

외 2계 건평 10평 5흡

단기 4288년 월일

목 포 시

제45회 목포시의회 제2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2월 4일 상오 10시 4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2월 4일 하오 1시 2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문택호, 김길환, 명남철, 이복주,

김창현, 진복춘, 김경현, 정용표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김용준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 45회 제1차 회의록 통과
- 2) 각 분과 위원회회의 상황보고
- 3)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대표자 회의참석 결과보고
- 4) 상수도 신설 후보지 현장 답사결과보고

◆ 부의사항

- 1)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출예산안
- 3) 단기 4288년도 제1회 동정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 4) 기타

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자동차등 통행료 변경 진정보고

항동 시장 점포 임차사용 진정보고

- 안강생외 7인
- 김기만 육군이등상사
- 목포상이 용사회

전국지방의회 대표자 대회 결의문 보고

8. 토의사항

※ 가. 제45회 제1차 회의록 통과

본 건 간사 방재수 낭독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

※ 나. 각 분과위원회 회의록 상황보고

1)문사위원장 이문길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8년도 제1회 목포시 공익전당포 세입출 예산안 상환계획표 중 3개월분이자 192, 000환을 182, 000으로 삭감 하고 그 차액 10, 000환을 예비비로 수정 계상키로 하여 본건통과시키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11시 정각 이복주, 진복춘 의원 참석 17명)

2)내무 분과의원회 김팔용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관계 제외 및 단기 4288년도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케 되었다는 보고에 이어

(11시 5분 명남철 의원 참석 18명)

3)산업분과위원장 진복춘 의원으로부터 산업관계 예산안 역시 원대로 무수정 통과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음

※ 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 대표자 회의 참석 결과보고

본 건 당시 의회 대표 참석의원 부의장 이소규로부터 동대회에서 결의한 개 항목의 결의사항을 개조적으로 낭독보고 하였음

※ 라. 상수도 신설후보지 현지 답사보고

◇이 재 흥 의원

- 본 건 여론 수습차 본 조사단 일행이 방라 먼저 나주군수 황도익을 만나 논의한 바 있는데 동군수의 말에 의하면 저반 서독기술자일행이 현장을 조사하고 해비료 공장 시설에는 상당량의 용수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한다. 그리하여 전반의 통고문을 발송케 된 것이라 하며 그후 나주 읍장 및 유지등과 합석 예히 조사케한 당 시건설과장 등이 기술적인 감정내용 즉 동지역의 1일 평균유수량 93만톤을 예상하며 당시의 상수도 공사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100분지 1인 1만톤 가량만 할애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 등을 역설 화기애애한 가운데 피차 완전합의를 보게 되었으니 우선 시급한 대책으로 당 시의회에서 1인을 파견 나주읍 의원 1인과 동도 재 서울 서독기술진을 만나 전서 유수량의 정확한 양과 할애여부의 정확한 점을 타진키로 하자는 동의.

◇김 남 진 의원

- 이재흥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본 건 추진에 있어서는 저반 방라한 의원들에게 일임하자는 첨가동의

◇이 세 일 의원

- 금조의 광주신보의 지상을 보면 아즉도 나주읍 의장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다는 말에 이어

◇김 삼 성·이 소 규 의원

-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순서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니 나주읍 의장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당 시의회에서 재차 심라케하여 이 문제를 종용 후 동류 의원 1인과 동행 상경하자는 개의 표결결과 재석 18명 만장일치 가결

◇김 영 완 의원

- 규모가 큰 합흥 질소비료 공장 등을 인용 절대성사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의 발언이 있었음

◇김 남 진 의원 김급동의

- 금조 목포일보 지상에 의하면 「재정법 무시한 각종 공사입찰·시민의 부담조 장·업자와 내통하고 취익(取益) 낭비하다」라는 제목으로 행정부와 시의원 업자간에 결코 불미 시러운 처사를 한 것처럼 기사내용이 되어 있는 즉 그 사실여부의 진상규명을 하여야겠으니 행정부와의 질의요청에 긴급동의. 재청.

◇김 삼 성 의원

- 중앙국민학교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니 교육청 서무과장을 출석케 하자는 참가 동의.
표결결과 재석 18명 만장일치 가결

◇김 영 완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 시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

◇명 남 철 의원

- 향동시장 입주자 문제에 대하여 시의원에 책임 전가한 사실의 유무

◇산업과장

- 언어도단이다 그러한 사실은 전무하다

◇이 복 주 의원

- 연동공설시장 문제에 있어 그 사양서에 옥상의 양철 28번임을 강통으로

변경한 이유

◇김 경 현 의원

- 항동시장의 사양서에도 28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가인 31번 양철로 변경한 이유

◇김 영 완 의원

1. 3대공사의 입찰은 완전무결하다고 보는가
2. 사양서와 변경한 사실의 유무
3. 입찰 시 청부업자와 결탁한 사실의 유무

◇김 삼 성 의원

- 개정법을 무시하고 낙찰시킨 이유해명

◇임 일 남 의원

- 설계 변경 당시 행정부 자유재량으로 임의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가

◇김 삼 성 의원

- 예산조치 및 입찰 낙찰 일자로 보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물가의 등귀를 초래한 것은 행정부의 실수로 기인된 것이 아니냐

◇손 백 수 의원

- 연동시장 준공 검사당시 그 건축에 대한 허다한 손색점도 발견 하였는 것이다.

◇총무과장

- 이 문제는 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있어 기인할 작난인 것 같으며 28번 양철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구득 할 방도가 없어 부득이 32번으로 대체 한 것이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최종지불일자에 납부키로 업자로부터 차압서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 무시란 언어도단이며, 해당조례의 입법취지도 각 업자의 무리한 액면으로 입찰케 하여 조잡한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특수공사의 특수재사용 등등 조건으로 예정가격

에 근사 입찰자에게 낙찰케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 3차에 공하여 일반경쟁입찰에 회부케 되었으며 연동시장이 그 당시 고정된 예산에 급작히 물가등귀로 인하여 부득이 깡통 양철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경위설명

◇ 김 삼 성 의원

- 중앙국민학교 문제내용을 질의

◇ 교육청 서무과장

- 입찰순서와 경위 설명이 있는 후 시 총무과장이 말한바와 같이 꼭 같은 이유로는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곤란한 입찰자에게 낙찰시키게 된 것이며 예정 가격도 교육위원들과 타협 후 입찰 1분전에 교육감 단독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 이 재 흥 의원

- 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3인정도의 조사위원을 구성 조사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종결짓자는 동의

◇ 진 복 춘 의원

- 3인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을 선정 6인으로 구성하자는 개의 동의집 수락

표결결과 재석 18인 만장일치 가결

-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위원을 지명

내무 : 김팔용, 임일남

산업 : 진복춘, 이재홍

문사 : 이복주, 김경희

· 하오 1시 25분 오전회의를 산회하고 하오 2시 30분부터 속개할 것을 선

언

- 하오 2시 25분 성원미달 유회 하고 내2월 6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언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8년 2월 4일

시의원 손 백 수

시의원 진 복 춘

작성자 주 도 식

제45회 제 3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2월 6일 상오 10시 3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2월 6일 하오 12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삼성, 이복주, 김남진, 문택호, 김길한, 이문길, 김경희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과장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1) 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자동차 등 통행로 원상복구진정

2) 향동시장점포 임차사용 진정보고

· 안강생외 7인

· 김기만 육군이등상사

· 목포상이용사회

◆ 부의사항

- 1)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단기 4288년도 제1회 동정 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 3)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안

8. 토의사항

※ 가. 연동 관통도로에 대한 자동차등 통행로 원상복구진정의 건

◇손 백 수 의원

- 객년 12월중부터 실시하여온 연동 일방도로야 말로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중점으로 하였던 것이나, 목포직물회사를 지나올라 후미끼리(踏切 : 철도건널목)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4미터밖에 안된 협소한 곳에다 30도 경사치로 되었으며 형무소 서문부근 각우(모퉁이)등 추락의 위험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취월장 발전도상에 있는 육로관문인 연동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운수업자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무단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니 종전대로 원상복구 하겠금 당국에 건의하기로 본 의회에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10시 45분 김삼성의원 참석 14명)

◇이 재 흥 의원

- 이 문제 대하여는 당 의회의 위신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때는 일방도로를 적극 진정하여 놓고, 또 다시 원상복구를 결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로 생각한다.

◇임 일 남 의원

- 운반관계의 불편과 시간의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동차는 현재대로 실시하되 우마차는 종전대로 통행케 하는 것이 가(可)라고 사료됩니다.

◇김 자 흥 의원

- 본 의원은 과거 일방도로 추진위원의 1인이 있으나 의회의 위신상은 불가한 일이로되 3인위를 구성, 경찰국에 파견 진정키로 하는 것이 가(可)라고 생각한다.

◇정 응 표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 과거 일방도로 추진시 김남진 의원의 동의로 만장일치가 결된 것이 아닌가 김남진 의원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행정부당국은 학생통로 등을 부설 할만한 복안은 없는가
(11시 40분 이복주 의원 참석 15명)

◇김 삼 성 의원

- 연동도로는 목포발전의 요소이며 동맥일 것이다. 행정부당국은 해 도로의 폭을 넓이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도와 교섭하여 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

- 목포직물회사 근방도로의 위험성을 제거키 위하여 명년도 예산에나 계상 착수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 삼 성 의원

- 예산면으로 도비 보조 등 행정부에서 추진키로 하고 3인 위원을 구성 사전에 원상복구 교섭위원을 관계 당국에 파견할 것을 개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5명중 가 14표 가결
교섭위원은 이소규, 진복춘, 손백수 의원을 지명

※ 나. 항동시장 점포 임차사용 진정 보고

본 건 서기 박찬대로부터 각 진정서 내용의 낭독이 끝나자

◇이 재 흥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당 의회에서는 관여 안키로 결의한 것이니 행정부로 이송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 가결

※단기 4288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김 자 흥 의원

-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심심 검토 심의한 것이니 원안대로 무수정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이 복 주 의원

- 본 예산면을 검토컨대 남교동 시장 예산 등 막대한 것이 있으나 종전 중동 시장 등의 예로 보아 예산통과는 시켜 놓고 행정부에서의 집행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니, 상수도 문제와 관련시켜 시기적으로 조기 일 경우에는 그 사도변경(使途變更)할 것을 전제로 원안통과할 것을 첨가동의. 3청. 동의집 수락

표결결과 재석 15명중 가 13표 가결

※ 라. 단기 4288년도 제1회 동정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손 백 수 의원

- 본 건 역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 가결

※ 마.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안

◇손 백 수 의원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5명 중 가결 13표 가결

◇김 삼 성 의원 긴급동의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 행정부 사무감사를 오는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것을 긴급 동의

◇시 총무과장

-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는 행정부의 사정이 전도적(全道的)으로 말위(末位)란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점하고 있는 당 시 국채소화독려로 금월 말일까지 청원총동원 전력할 것을 결정 진바 있으며 근근 중앙으로부터도 사무 감

사반이 내도할 것 같은 실정으로서 그 시기를 좀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발언이 있다

◇김 삼 성 의원

- 그렇다면 그 입장을 참작하여 내3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공하여 실시할 것을 수정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 가결

◇손 백 수 의원 긴급동의

- 거반 실시하였든 시내 판자옥 철거시 회피 철거자 137호가 연동 뺄바탕으로 이주하여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호양곡을 우선적으로 시배(施配)하여야 할 판자옥 철거 주민의 계는 전연 없고 보광동 등지 중앙동 거주민으로 더 생계가 부유한 층으로 배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으니 본 건 진상조사위원을 구성 조사케 할 것을 긴급 동의.

◇김 영 완 의원

- 본 건에 대하여 피 철거자로서 판자옥 철거전의 구호양곡 수배자가 몇 명이며 철거 후(연동으로 이주 후)의 수배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연동으로 피 철거자들이 이주 후는 해당동에 얼마쯤이나 증배하였는지 행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

◇사회과장

- 과거와 달라 근경(近頃)에는 극소량의 구호양곡이 오는데 본 건 배당에 애로가 극심할 뿐 아니라 종전의 전포제를 폐지하고 동장 책임하 피 대상으로 하여금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는 관계상 여러가지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수량등은 세밀히 조사하여 차기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소 규 의원

- 거(去) 4일부터 목포일보기사 사건에 대하여 언론계에 요청하는 바이나 시의회나 행정부 등을 망라하여 비난하는 것보다 당 시 전반적으로 대외적

영향에 미치는 것이 지대하오니 개별적으로 지적 그 시비를 열거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하오 12시 50분경 제45회 의회의 폐회할 것을 선언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2월 6일

시의원 손 백 수

시의원 진 복 춘

작성자 주 도 식